

별표 제 2 호

**위탁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**(제8조제1항 관련)

□ 직접비

세목구분	계상기준	
인건비	○ 세목내용 -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·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○ 계상기준 - 소속 기관(재직중인 기관 포함)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(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)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, 총 연봉의 100%초과 불가 <인건비 산정기준>	
	구 분	세 부 산 정 내 용
	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	○ 연봉총액 × 참여율 ※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○ 정부인정 12개 항목 × 참여율 - 기본급여(기본급, 상여금) - 정액급(기본연구활동비, 능률제고수당기본급) - 복리후생비(가족수당, 중식보조비, 자가운전보조비) - 법정부담금(퇴직급여충당금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	기 타 기 관	○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 × 참여율
- 당초 계획 대비 20%이상 증액 시 연구소 승인 필요		
학생 인건비	○ 세목내용 -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	
	구 분	세 부 내 용
	대상자	○ 학사·석사·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(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) ○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(리서치 펠로우 포함)
참여요건	○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○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」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·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	
○ 계상기준 - 해당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(man-month) 기준으로 계상 -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(미지급 참여불가). 이 경우 연구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필요 1. 학사과정 : 월 1,000,000원 2. 석사과정 : 월 1,800,000원 3. 박사과정 : 월 2,500,000원		

<p>연구 장비 · 재료비</p>	<p>○ 세목내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기·장비와 부수기자재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·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: 해당 연구과제의 최종(단계)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(기기·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)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·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</li> <li>2. 시약(試藥)·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·관리비</li> <li>3. 시제품(試製品)·시작품(試作品)·시험설비 제작경비</li> </ol> <p>○ 계상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</li> <li>-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·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·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소 승인 필요</li> </ul>
<p>연구 활동비</p>	<p>○ 세목내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외여비 :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(체재비 포함)</li> <li>2. 수용비 및 수수료 :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·복사·인화·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, 체세공과금 및 수수료,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광고료 등</li> <li>3. 기술정보활동비 : 전문가 활용비, 국내외 교육훈련비, 도서 등 문헌 구입비, 회의장 사용료, 세미나 개최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번역료, 숙기료 및 구독료, 기술도입비 등</li> <li>4.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: 시험·분석·검사, 임상시험, 기술정보수집, 특허정보조사,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</li> <li>5. 세부과제조정관리비 :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</li> </ol> <p>○ 계상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,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</li> <li>- 국외 출장여비는 국·공립 대학(단,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) 및 국·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,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,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. 이 경우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불가</li> </ul>
<p>연구 과제 추진비</p>	<p>○ 세목내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내여비 :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</li> <li>2. 연구환경유지비 :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용 등</li> <li>3. 회의비 : 외부기관 간 회의비(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,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)</li> <li>4. 식대 :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식대</li> </o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상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,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</li> <li>- 국내 출장여비는 국·공립 대학(단,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) 및 국·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,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,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. 이 경우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불가</li> <li>-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을 의미</li> </ul> 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 수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목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·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</li> </ul> </li> <li>○ 계상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건비(인건비로 계상된 현물·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)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</li> <li>- 당초 계획 대비 증액(초과집행)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탁 연구 개발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목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 용역으로 위탁수행 지급 경비</li> </ul> </li> <li>○ 계상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접비로 계상하되,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초과 불가</li> <li>- 당초 계획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시 연구소 승인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과 활용 지원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목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과학문화활동비 :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 등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</li> <li>2.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: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,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(인증포함) 활동에 필요한 경비</li> </ol> </li> <li>○ 계상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</li> </ul> </li> </ul>

□ 간접비

비목구분	계상기준
간접비	<p>○ 세목내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원인력 인건비: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원인력 (장비운영,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),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(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,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)의 인건비</li> <li>2. 연구지원비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기관 공통지원경비: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</li> <li>나.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: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</li> <li>다. 연구실 안전관리비: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」에서 정한 경비</li> <li>라. 연구보안관리비: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, 보안 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</li> <li>마. 연구윤리활동비: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·운영,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, 연구 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</li> </ol> </li> </ol> <p>○ 계상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</li> <li>-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)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가능</li> <li>-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)에 연구소(주관과제 연구책임자)가 별도로 정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가능</li> <li>-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계상</li> <li>- 당초 계획 대비 증액(초과집행) 불가</li> </ul>

※ 비교 : 주관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추진계획 및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상기 표의 내용에 대한 조정기준 적용 가능

1. 연구수당 계상기준 및 간접비 계상기준(비영리기관에 적용하는 간접비 고시비율)의 축소
2.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연구소 승인사항에 대한 기준금액·적용비율 축소 및 신규사항 추가 지정